

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9. 2.

임실군의회 의장

**1. 제정이유**

임실 지역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“임실군 애향운동본부”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목적 ----- (안 제1조)
- 나. 정의 ----- (안 제2조)
- 다. 활동 ----- (안 제3조)
- 라. 지원 ----- (안 제4조)
- 마.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----- (안 제5조)
- 바. 사기진작 ----- (안 제6조)
- 사. 준용 ----- (안 제7조)
- 아. 시행규칙 ----- (안 제8조)

**3. 참고자료**

- 가. 관계법령: 지방재정법 제17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협의 등 :
  - 1) 부패영향평가/규제심사 : 원안동의
  - 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- 라. 기 타
  - 1) 제정문안 : 따로 붙임
  - 2) 입법예고('15. 6. 29 ~ '15. 7. 20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  - 4) 관련법령 발췌문

##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임실군 지역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“임실군 애향운동본부”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실군 애향운동본부”란 임실군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.
2. “애향사업”이란 임실군민과 출향인들을 위한 봉사활동, 의식개혁활동 등 임실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활동)**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, 강연회 개최
2. 다문화가정,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호활동
3.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
4. 출향인을 위한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
5.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업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
6. 그 밖에 군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임실군수(이하 ‘군수’라 한다)가 인정하는 활동

**제4조(지원)** 군수는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도감독 및 지원중단)** ① 군수는 임실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실군의 명예를 떨어뜨려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
2. 임실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된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

**제6조(사기진작)** 군수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「임실군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.

**제7조(준용)** 애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지원(안 제4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- 행정지원과장 김 학 성



**□ 지방재정법**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<개정 2014.0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